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310773 손해배상(기)
원 고	정우해운 주식회사
피 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72,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일본국으로부터 중고선박 '스카이케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취득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나. 원고는 2016. 11. 14.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영도구청장'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선박이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27,853,600원을 경감받았다.

다. 영도구청장은 2016. 12. 12.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인 2016. 11. 21.까지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30,872,930원(= 경감받은 27,853,600원 + 가산세 3,019,3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7. 1. 2.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4.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A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취득세 경감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완료기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다. 관련 법령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A은 원고에게 '취득세신고일'부터 30일 이내라고 잘못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6. 11. 14.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12. 14.까지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A은 2016. 11. 21.에 이르러 원고에게 전화하여 취득일인 수입통관일부터 30일이 되는 2016. 11. 21.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취득세가 경감된다고 하면서 경감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원고가 기한 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못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A의 잘못된 안내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30,872,93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증인 B의 증언만으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A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설령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A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잘못된 안내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2016. 11. 4.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A에게 전화로 문의한 후 2016. 11. 14.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당시 영도구청장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갑 제1호증)를 교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 중 의무준수사항으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미등록 시 추징'이라고 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간의 기산일을 '취득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납세의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자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기산일을 '취득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A으로부터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고, 위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에는 원고가 당초 안내받은 '취득세신고일'과 명백히 다른 '취득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A의 잘못된 안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 비과세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

3) 원고는 2016. 12. 5.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령은 19년 5개월로서 구 해운법(2017. 3. 21. 법률 제14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에 해당하여 취득 즉시 곧바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용 운항선박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1. 30. 명기선박 주식회사(이하 '명기선박'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선박을 대여하는 용선을 하여 이 사건 선박을 명기선박의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항선박명세서에 등록된 선박인 '경동프런티어'의 대체선으로 먼저 등록하게 하였고, 이후 해운법 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운항선박으로 등록하였다. 원고가 명기선박에 이 사건 선박을 대여하는 용선을 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경감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는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가.「해운법」 제4조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구 해운법(2017. 3. 21. 법률 제14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등록기준)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②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1

1. 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선박이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하여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선령이 15년을 경과한 시점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4.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제1조의2 제2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인 경우

5.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수산물운송을 위하여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한 선박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끝.